

거버넌스위원회규정

2022. 4. 21.

SK 바이오팜 주식회사

제 정: 2019. 8. 19.
개 정: 2021. 4. 21.
개 정: 2022. 4. 21.

제 1 조 (목적)

-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거버넌스(Governance) 위원회 (이하“위원회”)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- ②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 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,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직을 겸임한다.
- ③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또는 토의한 사항의 결과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.

제 4 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단,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최초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를 정하고 회의 개최 2 일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④ 제 3 항의 소집통지는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⑤ 긴급을 요하거나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2 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5 조 (결의 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6 조 (결의사항)

위원회는 주요 사규의 제·개정 및 폐지(정관, 지배구조헌장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규정 제외)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.

제 7 조 (사전검토 사항)

위원회는 회사 주요 의사 결정사항에 대한 투명한 검토를 통해 이사회 중심 경영원칙을 실행하고 주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검토 대상은 아래와 같다.

1.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『상법』에서 이사회

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

2. 정관, 지배구조헌장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규정 제·개정안
3. 기타 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

제 8 조 (토의 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.

1. 윤리 경영 실천 방안
2. 이사회 역량 구성표 (Board Skills Matrix)
3.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현안 등 위원장 또는 회사가 토의를 요청한 사항
4. 사외이사들만의 협의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 9 조 (자료제출 요구권 등)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인사에게 위원회 출석, 관련자료의 제출 및/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간사 조직)

- ① 위원회의 간사 조직은 이사회사무국으로 한다.
- ② 간사 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1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위원과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 (2019. 8. 27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19 년 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1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2. 4. 21.)

제 1 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22 년 4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.